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572174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06. 6. 1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2. 피고는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9. 접수 제34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누나이고, C과 피고는 2001. 6. 18. 혼인하였다가 2007. 7. 26. 이혼한 사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 5. C 명의로 2000.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6. 19.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C의 어머니인 D은 2017. 11. 19. 사망하였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C이 있다.

라. 한편 C은 2018. 4. 6.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18느합1128호로 상속재산분할 등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단5244474호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각 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1999년경부터 미국에서 돈을 벌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을 송금하고 상가매입자금, 세금, 공과금 등을 대여해 주는 등 2003. 9.까지 피상속인을 부양하느라 101,342,752원을 지출하였고, 이후로도 2017년경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비, C의 국세, 공과금 비용 등 약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합계 금원 상당의 기여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C은 원고의 위와 같은 채권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특별수익 부동산과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위장이혼한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0년경 C은 29살의 미혼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여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6. 6. 19.에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분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128호 심판청구 사건의 재판에서 그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C의 상속재산 분할비율이 달라질 뿐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여분과 관련된 금전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성립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직접 구입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채무자의 법률행위 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06. 6. 19.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20. 7. 13.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비록 원고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 후 입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될 것을 요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분 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채권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성립된 채권이라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128호 상속재산분할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4474호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분과 기여분 등을 주장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김주현, 판사 구하경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구 서울 성동구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59.76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중구 대 7276.4㎡2. 서울 성동구 대 4451.2㎡

대지권의 종류 : 1.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1727.6분의 27. 55